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907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대관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 대관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5조)
- 대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19조)
-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있음(원안가결)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권고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감면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
 - 반영결과: 제5조 관람료 감면 관련하여 권고내용 포함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적정(협의 완료)
-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3. 7.~ 3. 26.) 결과: 의견 없음
-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 작성자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김미화(☎ 2133-2708)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이라 한다) 내의 컨벤션, 전시관 등으로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
2. “대관”이란 행사, 공연, 전시 등(이하 “행사등”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시설을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정기대관: 다음 연도 및 5년 이내 행사등의 일정 확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는 대관
 - 나. 수시대관: 정기대관 지정 이후 잔여일정이 발생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대관
3. “대관자”란 제1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행사등의 개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 이용의 원칙)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 또는 대관자가 행사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1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1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7.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1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9.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20.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21. 그 밖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주차요금) ①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 부설주차장을 이

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1. 취식 또는 음주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난무, 흡연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대관의 신청 및 허가

제8조(대관 신청) 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대관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 접수기간까지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대관의 경우 대관 일정이 비어있을 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대관 제한) 시장은 대관 신청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등

2. 특정 종교단체가 개최하거나 종교적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등
3. 특정 정치단체가 개최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등
4. 그 밖에 친목모임 등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행사등

제10조(대관 허가) ①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정기대관은 대관 신청서 접수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수시대관은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대관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신청이 1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대관 허가 취소) 시장은 대관을 허가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대관자에게 그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대관자가 대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대관료를 시장이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대관자가 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의 유지와 관련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대관자의 의무) ① 대관자는 대관받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관받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대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안된다.

④ 대관자는 대관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장 대관료

제13조(대관료) 시장은 대관자에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산정한 대관료를 부과·징수한다. 대관료 부과와 관련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행사등의 경우: 면제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주관하는 행사등의 경우: 20퍼센트 감액

제15조(대관료 납부 및 반환) ① 대관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 대관심의위원회

제1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설 대관의 허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대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된 후 해산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행사등 관련 전문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디자인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④ 위원장은 심의 당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게

대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관리·운영의 위탁

제2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서울디자인재단에 위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시설에 대하여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 시설의 종류(제2조제1호 관련)

구분	시설명		면적(m ²)
컨벤션	컨벤션 1관		2,992
	컨벤션 2관		1,547
	부속 시설	컨퍼런스홀	414
		비즈니스라운지	86
		고객지원실	289
		VIP대기실	102
전시관	전시 1관		1,216
	전시 2관		1,462
	부속 시설	수장고	165
		준비실	163
	둘레길		4,051
다목적홀	다목적홀 1 (1층)		3,062
	다목적홀 2 (2층)		1,340
	화상 스튜디오 (2층)		378.22
	화상 회의실 (2층)		114.18
	다목적홀 3-1 (3층)		627.6
	다목적홀 3-2 (3층)		416
	다목적홀 4-1 (4층)		570
별도 전시실	갤러리문		341
	이간수문전시장		1,075
실외 공간	디자인거리		617
	어울림광장		2351
	잔디언덕		1,919
	팔거리		781
	기타(공원)		14,920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당해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추가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당해 개정안에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김미화(2133-2708)